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56호 2014. 9. 12.(금)

공고 (입법예고)

- 사천시 공고 제2014-690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
조례안 입법예고 -----2
- 사천시 공고 제2014-691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
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-----4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기획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·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 356호 (2)

공고(입법예고)

사천시 공고 제2014 - 690호

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4년 9월 12일

사 천 시 장

1. 개정이유

- 「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또한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법령 명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며,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특정 성(性)의 위원비율 한도 및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함(안 제8조, 12조~17조)

사 천 시 공 보

제 356호 (3)

- 다.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 신청규정을 신설함(안 제18조)
- 라.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제도를 명확하게 함(안 제19조~21조)
- 마.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규정을 신설함(안 제22조)
- 바.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(안 제24조)
- 사. 지원 취소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함(안 제25조)
- 아. 투자유치 성공보상 규정을 신설함(안 제26조)
- 자.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규정을 삭제함.
- 차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함.

3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공단조성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행정정보/법무행정종합정보/입법예고란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보내실 곳 : 사천시장(참조 : 공단조성과장)

(우편번호 : 664-701, 주소 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 : 831-3474, FAX : 831-6045)

사 천 시 공 보

제356호(4)

사천시 공고 제2014 - 691호

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4년 9월 12일

사 천 시 장

1. 개정이유

- 「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또한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법령 명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며,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외국인투자의 요건 규정을 신설함(안 제6조)
- 나. 시설보조금 지급규정을 명확하게 함(안 제9조)
- 다. 국내기업의 지원규정을 명확하게 함(안 제12조)

사 천 시 공 보

제 356호 (5)

- 라. 보조금 사용, 정산규정을 신설함(안 제15조~16조)
- 마.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(안 제17조)
- 바. 지원취소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함(안 제18조)
- 사. 융자금의 상환 규정을 신설함(안 제19조)
- 아. 투자유치 성공보상 규정을 신설함(안 제20조)
- 자.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규정을 삭제함.
- 차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함

3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공단조성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행정정보/법무행정종합정보/입법예고란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보내실 곳 : 사천시장(참조 : 공단조성과장)

(우편번호 : 664-701, 주소 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 : 831-3474, FAX : 831-6045)